

온라인강좌 운영 규정

제정 : 2020. 01. 10.

개정 : 2020. 07. 03.

담당 : 교학팀(02-950-5406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정의)	제3조(온라인강좌운영위원회)	제4조(운영부서)
제5조(강좌개발)	제6조(이러닝강좌 개설)	제6조의2(블렌디드러닝강좌 개설)	제7조(강좌운영)
제8조(책임시수인정)	제9조(수강신청)	제10조(출석인정)	제11조(성적평가)
제12조(수업평가)	제13조(휴 · 보강)	제14조(K-MOOC 학점인정)	제15조(기타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의1에 의거하여 온라인강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온라인강좌”라 함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교수-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강좌를 말하며, 온라인 수업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블렌디드러닝(blended learning)과 이러닝(e-learning)으로 구분한다.(개정20.07.03.)

1. 블렌디드러닝(blended learning) : 평가 활동을 제외한 수업일수의 30%미만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의. 단, 오프라인강좌의 보강은 제외
2. 이러닝(e-learning) : 평가 활동을 제외한 수업일수의 70%이상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의
3.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(K-MOOC) : 교육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의

제3조(온라인강좌운영위원회) ① 온라인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라인강좌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교수학습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10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.
2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3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 관리 규정에 따른다.

② 온라인강좌운영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온라인강좌 콘텐츠 개발 및 결과물 심의에 관한 사항
2. 개발된 온라인강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
3. 온라인강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

제4조(운영부서) ① 온라인강좌의 운영부서는 다음과 같다.

1. 교학팀 : 온라인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2. 교수학습센터 : 온라인강좌 콘텐츠 개발 및 결과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

제5조(강좌개발) ① 이러닝강좌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.07.03.)

- ② 이러닝강좌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 및 교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블렌디드강좌는 별도의 승인없이 개발이 가능하다.(개정20.07.03.)
- ③ 개발된 이러닝강좌의 개설 학기를 기준으로 3년 이내 퇴직을 앞둔 교원은 이러닝강좌를 개발할 수 없다.(개정20.07.03.)
- ④ 위원회는 콘텐츠 개발 시 정보윤리 및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- ⑤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콘텐츠 개발자에게 있다
- ⑥ 이러닝강좌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본교에 있다.(개정 20.07.03.)

제6조(이러닝강좌개설) ① 이러닝강좌는 정규학기 학기 개시 전 개발이 완료된 강좌의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20.07.03.)

- ② 위원회의 승인으로 개발이 완료된 이러닝강좌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.(개정20.07.03.)
- ③ 이러닝강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학기 개설교과목 회신 시 온라인강좌 개설 배경 및 필요성이 명시된 학과 회의의사록을 첨부하여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20.07.03.)
- ④ 이러닝강좌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매학기 학과별 개설교과목의 5분의 1 이내로 한다.(개정 20.07.03.)
- ⑤ 이러닝강좌는 교원 1인당 매년 3강좌까지 개설 가능하다. 다만, 온라인강좌를 개설하는 교원은 해당 학기 오프라인강좌를 최소 1강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.(개정20.07.03.)

제6조의2(블렌디드러닝강좌개설) ① 블렌디드러닝강좌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기 개설교과목 회신 시 별도의 신청서와 학과 회의록을 첨부하여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(신규20.07.03.)

- ② 블렌디드러닝강좌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매학기 학과별 개설교과목의 5분의 1 이내로 한다.(신규 20.07.03.)

제7조(강좌운영) ① 온라인강좌의 콘텐츠 분량은 1학점을 기준으로 1차시 25분 이상이 되어야 하며, 1차시 총 학습시간은 콘텐츠 재생시간 및 학습활동(토론, 퀴즈, 학습정리 등)시간을 종합하여 1차시 50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- ② 이러닝강좌는 콘텐츠를 개발한 전임교원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분반, 연구년, 퇴직 등으로 개발한 교원이 강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은 교원의 강좌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.(개정20.07.03.)
- ③ 이러닝강좌로 개발된 콘텐츠는 3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교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 단, 블렌디드러닝강좌로 개발된 콘텐츠는 2년 사용으로 제한한다.(개정 20.07.03.)

- ④ 강좌를 운영하는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1. 강의설계, 강의자료 구성
 2. 강의동영상 촬영 및 관리
 3. 강의진행 및 수강생 관리와 평가
 4. 기타 온라인강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⑤ 블렌디드러닝강좌로 개발된 콘텐츠는 강의 2주전까지 탑재하여 교수학습센터의 사전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. 단,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.(신규20.07.03.)

제8조(책임시수인정) ① 온라인강좌의 책임시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e-learning(이러닝) : 개발 교원과 운영 교원에게는 편성된 시간의 2분의 1을 책임시수로 인정하며 개발 교원의 시수는 분반과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인정하고 운영 교원의 시수는 분반에 따라 각 인정한다.
 2. blended learning(블렌디드러닝) : 개발 교원에게는 편성된 시간의 3분의 1을, 운영 교원에게는 편성된 시간의 3분의 2를 책임시수로 인정하며 개발 교원의 시수는 분반과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인정하고 운영 교원의 시수는 분반에 따라 각 인정한다.
- ② 온라인강좌 콘텐츠 개발 교원의 책임시수 인정은 제작 후 3년으로 하며, 이후 연장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.

제9조(수강신청) ① 이러닝강좌의 수강은 본교 재학생에 한한다.(개정20.07.03.)

- ② 이러닝강좌의 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점은 학점교류를 포함하여 매학기 6학점 이내로 하며, 졸업 시까지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(개정20.07.03.)
- ③ 이러닝강좌의 수강신청은 오프라인강좌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.(개정20.07.03.)

제10조(출석인정) ① 온라인강좌는 각 차수별 1주 이내에 100%로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하며, 교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 출석인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- ② 출석인정 기준은 수업계획서 등을 통해 수강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.
- ③ 온라인강좌 중 e-learning(이러닝)은 결석계 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.

제11조(성적평가) ① 온라인강좌의 시험은 오프라인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과목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수업평가) ① 모든 온라인강좌는 수업평가를 실시하며, 평가결과는 콘텐츠 및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.

- ② 평가결과 4.0점 미만인 이러닝은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3조(휴·보강) 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의 휴강은 인정하지 않는다.

- ② 오프라인강좌의 보강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, 온라인 보강 횟수는 한 학기 2회로 제한한다.
 - ③ 온라인 보강 운영 기준은 제7조(강좌운영) ①항에 따르며, 교내에서 개발된 콘텐츠만 단회성으로 인정한다.(개정20.07.03.)
 - ④ 온라인 보강 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20.07.03.)
1. 교수학습센터와 필요시 콘텐츠 개발 일정 조율

2. 교학처에 온라인 보강계획 및 확인서 제출
3. 온라인 보강 콘텐츠 개발 후 보강 2주전 탑재하여 교수학습센터의 사전 모니터링 진행
4. 온라인 보강 진행
5. 교학처에 보강 증빙자료(학습진도현황 등) 제출

제14조(K-MOOC 학점인정) ① K-MOOC는 해당 학기 개설교과목 회신 시 채택하여 교학팀에 제출하고, 위원회 심의 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20.07.03.)

- ② K-MOOC는 1강좌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 인정학점은 졸업 시까지 최대 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K-MOOC는 PASS과목으로 평가하며 100% 수강 시 P를 부여한다.
- ④ 학점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이수 학기말까지 이수증이 첨부된 학점인정서를 교학팀에 제출하면 졸업학점으로 산입하여 인정한다.

제15조(기타)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수업·출석·성적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오프라인강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.

- ② 천재지변 등으로 본 규정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(신규20.07.03.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제15조 ②항은 2020-1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.